

2015년 제1차 기록물평가심의회 회의록

2015. 2. 16.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관리국)

2015년 제1차 기록물평가심의회 회의록

〈회의개요〉

의안번호	2015-1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15년 2월 16일 (월요일) 15:00 ~ 16:00 ○ 장 소 : 구청 지하1층 합동상황실											
참석위원	○ 위 원 장 : 민원여권과장 ○ 내부위원 : 총무팀장 ○ 외부위원 : 임진희, 오동석											
회의 진행순서	1. 개회선언 2. 기록물평가심의회 위원 소개 3.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방법 설명 및 심의 4. 폐회선언											
상정안건	2013년으로 보존기간이 만료되는 기록물로 부서에서 의견조회를 거친 기록물 총 4,681권의 폐기, 보존기간 재책정, 보류 여부 결정											
심의결과	<table><tr><td>심의 대상</td><td>폐 기</td><td>보존기간 재책정</td><td>보류</td></tr><tr><td>4,681권</td><td>4,395권</td><td>98권</td><td>188권</td></tr></table>				심의 대상	폐 기	보존기간 재책정	보류	4,681권	4,395권	98권	188권
심의 대상	폐 기	보존기간 재책정	보류									
4,681권	4,395권	98권	188권									

〈발언요지〉

□ ○○○ **간사**

지금부터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 폐기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기록물 평가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 본 심의 진행에 앞서 심의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오늘 심의할 기록물폐기대상은 4,681권으로 위원님들께 사전에 기록물평가심 의서 및 심의자료를 보내드렸습니다. 각 부서에서 제출한 폐기기록물 4,681권을 일일이 심의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므로 생산부서의 의견과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의견이 합치되는 기록물은 생산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심의하고,
- 생산부서의 의견과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기준』을 토대로 폐기 및 보존여부를 심의하도록 하겠음
- 그럼 위원장이신 ○○○ 민원여권과장님 주재로 심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음

□ ○○○ **위원장**

- 과·동에서 수합한 2013년 보존기간이 경과한 종이기록물 목록이 4,681권임
- 담당자가 일일이 검토를 하였고, 검토결과가 폐기 4,395권, 보존기간 재책정 98권, 보류 188권임.
-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자료에 나와 있는 검토내용이 적정한가 판단해주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람
- 질문에 앞서 검토내용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음

□ ○○○ **기록물관리전문요원**

- 기록물 목록을 받아서 기록물분류기준표를 먼저 검토함. 간혹가다 분류기준표에서 정확한 보존기간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경우 국가기록원의 공공기관 공통업무 보존기간표, 지방자치단체 기록관리기준표 표준을 같이 참고를 하면서 업무기능에 대한 평가를 진행함
- 저번 심의회때는 기록물 목록을 보면서 업무기능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들, 즉 내용평가가 필요한 기록물들은 실제 기록물을 심의위원분들께 보여드리고 평가를 진행하기도 하였음. 올해 목록에는 그런 기록물들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없는 것 같음. 이번 심의는 전체적으로 업무기능에 대한 평가가 될 것으로 생각됨

그럼 지금부터 검토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단위업무가 자체감사에 속하는 기록물은 서울특별시 중구 기록물분류기준표에 근거하여 10년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철은 5년에서 10년으로 보존기간 재책정하여 보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됨
- 정보공개청구 관련 기록물은 해당기관에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오면 민원여권과에서 해당부서로 배부를 하고, 각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음. 이것은 국가기록원 공공기관 공통업무 보존기간표를 보면 정보공개청구 처리(on-line-off-line)가 10년으로 책정되어 있어 해당기록물은 10년동안 보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됨
- 이행강제금 부과대장은 불법건축물 단속,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된 업무로 국가기록원 지방자치단체 기록관리기준표 표준 30년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기록물도 30년간 보존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됨
- 민원부조리신고센터 관련 기록물은 기록물 분류기준표에서 해당 업무를 정확히 설명하는 단위업무가 없는 것 같음. 국가기록원 공공기관 공통업무 보존기간표를 보면 10년으로 책정되어 있음.
- 물품관리 관련 기록물임. 서울특별시 중구 기록물분류기준표를 보면 각 처리과물품관리라는 단위업무가 있음. 해당 단위업무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책정되어 있음. 해당 기록물은 물품관리를 주관하는 재무과에서 생산한 기록물로 서울특별시 중구 기록물분류기준표에 10년으로 책정되어 있음
- 도로개설 및 확포장 공사 관련 기록물은 국가기록원 지방자치단체 기록관리 표준에 근거하여 영구로 보존기간을 재책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됨
- 처리과업무계획(보고) 평가에 속하는 기록물은 각 과에서 생산한 주요업무계획이라던지 주요업무 계획에 맞춘 예산확보 관련 기록물임.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 가장 가장 중요한 업무를 명시해 놓은 것이라 봐도 무방함. 주요업무계획은 기획예산과에서 취합을 하고 해당 기록물들은 영구로 관리하고 있음. 하지만 해당 기록물은 각 과에서 생산한 기록물로 서울특별시 중구 기록물분류기준표에 근거하여 5년 책정하여 관리함이 맞다라고 판단했음.
- 처리과예산회계 관련 기록물은 서울특별시 중구 기록물분류기준표에 근거하여 5년 동안 보존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됨.
- 가족보건사업관련 기록물로 영유아 업무일지, 임신기록부,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관계철 등이 포함되어 있음. 1년 또는 3년으로 제출된 기록물들은 서울특별시 중구 기록물분류기준표에 근거하여 5년 동안 보존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어 재책정 하였음.

- 처리과 민원 관련 기록물도 서울특별시 중구 기록물분류기준표에 근거하여 10년동안 보존하는 것이 맞음.
- 전염병관리 관련 기록물들은 건강관리과에서 생산하는 기록물임. 신종플루검체확인서철, B형간염관계철, 독감사업관계철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역시 서울특별시 중구 기록물분류기준표에 명확히 5년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기록물 철에 대한 보존기간을 재책정해야 한다고 생각함
- 인감관리대장관리 관련 기록물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7조에 인감관리대장은 영구로 관리하여야 함이 명시되어 있음.

지금까지는 보존기간이 명확히 재책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한 것들을 목록화 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보실 것들은 보류로 평가의견을 단 기록물들입니다.

- 문서전산화 관련기록물은 서울특별시 중구 기록물분류기준표에는 5년으로 책정되어 있는 기록물임. 해당 기록물은 기록물전산화사업 관련해서 발주하고 결과보고까지 한 기록물임. 해당 사업을 진행하면서 기록물 전수조사를 진행함. 문서전산화사업과 관련해서 중요기록물에 대한 이중보존 보존 매체를 접수함. 이러한 이유로 해당 기록물의 소관 단위업무를 준영구로 국가기록원에 단위업무를 보존기간 자체를 변경 신청해서 지금부터라도 준영구로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되어 보류로 판단함
- 지방세체납관련 기록물임.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서 세무과에서 지방세를 부과를 함. 체납관련 압류관련 기록물들은 개인의 재산권과 관련된 것으로 분쟁발생시에 명확한 증빙자료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록물들은 10년동안 보존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듦. 서울특별시 중구 기록물분류기준표에는 해당 단위업무가 5년으로 책정되어 있어 단위업무 자체를 보존기간 변경하는 쪽으로 고려되어 보류로 판단함
- 지방세 감면처리 관련 기록물은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라 부과 제척기간이 일괄적으로 5년은 아니고 어떠한 사유에 따라 5년, 7년 최대 10년까지 제척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록물들은 서울특별시 중구 기록물분류기준표에 5년으로 책정되어 있는 단위업무를 10년으로 변경해서 관리해야 됨이 맞지 않나라고 판단되어 보류함
- 전문건설업관리 관련 기록물은 가로환경과 업무임. 서울특별시 중구 기록물분류기준표에는 5년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국가기록원 지방자치단체 기록관리기준표 표준에 전문건설업관리 관련 기록물은 준영구로 책정되어 있음. 지금부터라도 단위업무를 보존기간을 변경하도록 하여 준영구에 맞게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판단되어 보류로 검토함

□ ○○○ 위원장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 보존기간을 정확하게 책정하는 것이 쉽지 않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업무하시는 분들이 업무에 필요한 기간만큼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임. 지방세 기본법처럼 관련 법령을 세세하게 알고 있어야 하고, 거기에 최소한 어느정도 증빙을 남겨야 된다 라는 것하고 업무와 매핑해서 보존기간을 책정하여야 함. 또한 국가기록원의 일반적인 공통업무의 보존기간 지침같은 것을 가지고 구청업무를 맞춰 최소한의 보존기간 이상을 책정하여야 함. 심의자료를 보니 이러한 것들을 꼼꼼하게 본 것 같음.
- 보류라고 판단한 것은 국가기록원과 협의를 해서 정하실 것임?

□ ○○○ 기록물관리전문요원

- 서울특별시 중구 기록물분류기준표에 단위업무가 명확하게 5년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재책정한다고 하고 보존하는 것보다는 단위업무 자체를 국가기록에 보존기간 변경 신청을 해서 그 쪽에서 승인을 해서 단위업무를 쓰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 ○○○ 위원

- 단위업무가 개별적으로 구청에서만 국가기록원과 협의를 하면 되는것임?

□ ○○○ 기록물관리전문요원

- 물론, 이제 각 기관마다 기록물분류기준표라는 것이 전국 공통은 아님. 공통업무가 있고 고유사무가 있음. 고유사무에 대해서는 국가기록원에 신청했을 때 국가기록원에서 검토를 하고 승인을 하게 됨. 중구에서 5년으로 신청해서 승인을 해준 단위업무가 타구에서 10년으로 올렸을 때 국가기록원에서 10년도 승인을 해주는 경우가 있음. 각 구별로 고유 사무에 대해서 약간씩 보존기간이 다르게 관리되고 있는 부분이 있음.
- 이 업무를 하면서 느낀 점은, 서울시 25개 자치구만이라도 대부분 유사한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보존기간을 명확히 통일을 시키면 좋을 것 같음.

□ ○○○ **위원**

- 제가 제안하는 부분은 단위업무가 보존기간이 책정되어 있지만 그 안에 여러 가지 철들이 생성되게 되어 있음. 기능평가를 하다보니 1년임에도 불구하고 5년으로 관리되는 부분이 있음. 단위업무에 대해 주요 생산되는 철에 한해서는 세부적 보존기간이 필요하지 않나 싶음.

□ ○○○ **위원**

- 담당자 의견처럼 25개구가 통일 시키는 것. 여기서 말하는 통일은 똑같이 보존기간을 정해 놓고 항상 그렇게 책정하자라는 의미는 아닌 것 같고, 표준화된 최소한의 보존기간들을 필요하고 만들어 가야한다 라는 의미에 동의함
- 하지만 구청에서 중요하하다고 생각했을 때 기준보다 상향해서 특정한 해 특별한 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기록물철에 대해서는 길게 보존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되면 그때 그때 재분류하는 것이 가능하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 ○○○ **위원**

- 목록을 전체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남겨야할 기록물들은 없는 것 같고, 모두 증빙적 가치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인 것 같음. 꼼꼼히 보셔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큰 무리가 없는 것 같음

□ ○○○ **위원**

- 전체적으로 의견을 주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함
- 자원봉사와 관련된 철들이 있음. 이것은 구민들이 다양하게 자원봉사했던 기록들. 문서내용을 구체적으로 봐야겠지만 구민들의 따뜻한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또 다른 일상기록일 것 같기도 함. 구청에서는 필요가 없으니까 처분은 하시되, 그런데 처분하는 방법이 꼭 폐기만 있는 것은 아님. 어딘가에 필요로하는 기관이 있으면 판매도 가능하고, 주기도 함.

□ ○○○ **위원장**

-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 자원봉사를 담당부서의 서류상으로는 아마 없을 듯하고 사례집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됨

□ ○○○ 위원

- 보류된 지방세 체납관련 기록물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예산회계법을 보면 채권소멸시효가 5년으로 되어 있어서, 5년이 지나면 채권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 아님? 이것 꼭 10년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듦.
- 보존기간을 연장해서 늘린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음. 보존기간을 늘렸을 때 문서를 보관하는 장소라 던지 예를 들어 예산회계 관련 기록물은 전부서가 생산하므로 방대한 양이 될 수 있음. 예전에 서무업무를 하다보면 예산서 같은 것은 담당부서에서 장기적으로 보존하고, 실제 각 과에서는 예산서를 참고하는 사항이 1년에서 2년밖에 안됨. 5년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듦
- 도로시설과에 도로확장 보상관계철 같은 것은 잘 재책정된 것임. 96년도 쯤 ○○○○○○에서 ○○○들여가는 곳을 예전에 공사를 하고 ○○○들여가는데 땅을 기부채납을 받음. 그런데 그 근거가 없음. 그 당시 보상관련철이 보존기간이 10년밖에 안되어 있었음.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 근거가 없어 외환은행에서 자기땅을 서울시에서 도로로 사용하니 보상금을 물어내라 해서 당시 250억을 물어준 적이 있음. 그래서 그것을 당시 서울시 책임도 있어 서울시에서 90%, 중구가 10% 보상한 적이 있음. 그래서 이러한 것은 준영구로 가는 것이 맞음.

□ ○○○ 위원장

- 지방세 체납관련 기록물은 이번 심의회때는 담당자가 바로 그점이 판단하기에 난해한 점이 있기 때문에 보류로 검토한 것 같음. 이것은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해서 다음 심의회때 ○○○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고려해서 폐기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길 바람

□ ○○○ 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심의대상 4,681권 중 폐기 4,395권, 보존기간 재책정 98권, 보류 188권으로 의결하겠습니다. (- 땡땡땡 -)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 폐기의 적정성을 위한 기록물평가심의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